

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(심사보고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8. 6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'99. 8. 6(의안 제38호)
- 라. 상정일자 : 제37회사천시의회의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(99.8.12상정)

2. 제안이유

- .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(법률 제5948호, '99.3.31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(현행 제16조, 별표 3)
- 나. 조례명을 “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”로 한다.

4.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

- 가.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임차료 상한을 폐지하고, 국가 행정기관의 개편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으로
- 나.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본회의 부의하기로 함)